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. 이하”로, “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, “부담금은”을 “부담금의 비율은”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조(부담기준) ①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”이라 한다) 중 <u>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</u>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<u>특별자치도</u>가 부담해야 하는 <u>부담금</u>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2조(부담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. 이하 -----</u> ----- <u>특별자치도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--- <u>부담금의 비율은</u>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